

서울특별시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2009
------	------

2017. 9. 1.
기획경제위원회

I 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년 8월 14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16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】

-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(2017.9.1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 . 제안설명의 요지(일자리노동국장 조인동)

1. 제안이유

- 가. 노동복합시설(가칭)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
근로복지시설로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제6조 제9호에 근거하여 민간위탁(신규)으로 운영하고자 함

나. 노동존중문화 확산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한국 노동운동의 시작을 연 전태일 열사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산재된 노동관련 시설을 집약화하여 전문인력(노무사, 전시 큐레이터 등)이 확보된 전문단체에 민간위탁(신규) 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함

다.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(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), ‘적정’한 것으로 결정되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노동복합시설(가칭)
- 소재지 : 종로구 관수동 152-1
- 시설규모 : 2,062.24 m^2 (지상1층~5층)
- 준공일자 : 2018년 상반기(예정) ※2018년 상반기 개관 예정
- 이용대상 : 시민

나.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8.3.1. ~ 2021.2.28.)
- 위탁업무
 - 노동복합시설 시설물 관리(경비, 청소, 설비)

- 전태일기념관 및 노동운동사 전시관 운영, 노동교육장 운영 등

- 소요예산('18년) : 1,267,000천원
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라. 민간위탁 필요성

- 노동복합시설(가칭)은 노동존중문화 확산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한국 노동운동의 시작을 연 전태일 열사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산재된 노동관련 시설을 집약화하여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

- 전문인력(노무사, 전시 큐레이터 등)이 확보된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III 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전태일 열사의 추모공간 및 산재되어 있는 시의 노동관련 시설을 집약화하는 노동복합시설을 조성하고,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하는 것임.

나. 노동복합시설 조성 현황

- 서울시(이하 “시”)는 한국 노동운동의 시작을 연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는 공간을 조성하고,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신규로 설치 예정인 비정규직근로자 건강증진센터,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 등 서울 각 지역에 산재되어 운영되던 노동관련 시설들을 입주시켜 서울시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노동복합시설을 조성·운영할 계획임.

〈노동복합시설 개요〉

- 시설명 : 노동복합시설(가칭)
- 소재지 : 종로구 관수동 152-1
- 시설규모 : 부지 $553.1 m^2$, 연면적 $2,062 m^2$
- 개관일시 : 2018.3.~

○ 위탁내용

- 노동복합시설 시설물 관리(경비, 청소, 설비)
- 전태일기념관 및 노동운동사 전시관 운영, 노동교육장 운영
- 서울노동권익센터, 감정노동보호센터 등 노동복합시설 입주시설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협의회 운영

○ 층별 용도

층 별	용 도
1층	이동노동자 쉼터, 주차장, 기계실 등
2층	전태일 기념 공간 및 노동운동사 기획 전시관
3층	교육장, 시민편의공간, 사무공간
4층	노동자 및 노동단체 공유공간, 비정규직근로자 건강증진센터
5층~옥탑	서울노동권익센터,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

- 시는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고 기념하는 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여, 적합한 공간을 찾던 중 청계천 전태일 다리를 중심으로 봉제박물관과 평화시장 등 관련자원과 연계 하여 랜드마크를 조성할 목적으로 현 위치의 건물을 매입하였음.
- 노동사(史)관련 시 차원의 관광자원을 개발한 점, 다양한 노동관련 시설들을 한 곳에 입주시킴으로써 시의 노동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전시관 및 노동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노동복합시설의 조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.

- 또한 노동복합시설 조성 후 시설 5층으로 현재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이전할 예정으로, 센터가 납부 중이던 연간 약 7천만원의 임차료를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도 있음.
- 그러나 노동복합시설은 민간 건물의 임차 전, 시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 등의 검토 없이 급하게 시설을 조성한 측면이 있고, 지난해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에서 모두 조건부 적정, 민간위탁운영평 가위원회에서도 한 차례의 부적정 결과를 받아 재심의 후 통과된 상태로, 동 사업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.

<p>'16.10.10 : 공유재산 심의(조건부 적정) -리모델링을 포함한 시설의 효율적 활용(고밀, 복합 등)방안 고려</p> <p>'16.10.25 : 시 투자심사(조건부 추진) -양대노총 등 노동계와 협의후 노동복합시설 활용계획 수립 및 공사비 등 총 사업비 재산정</p>

- 현재는 시설에 대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의 노력이 엿보이나, 노동복합시설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서는 지적받아 왔던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.

다.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

- 시는 2018년 노동복합시설의 민간위탁금으로 12억 6,638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며, 세부 내역은 1명의 관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, 시설관리비 등으로 다음과 같음.

〈2018년 노동복합시설 세부예산내역(안)〉

(단위: 천원)

통계목	요구액	산출내역
민 간 위 탁 금	1,266,38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인건비 295,077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장1명(3,377천원x1명x8개월) 27,013 - 팀장2명(2,816천원x2명x8개월) 45,058 - 팀원4명(2,120천원x4명x8개월) 136,288 - 기타 제수당 86,718 ◦ 운영비(경비) 189,005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무추진비(800천원x8개월) 6,400 - 건강보험료 등 의무보험료 37,965 - 일반수용비(13,080x8개월) 104,640 - 수선유지비(5,000천원x1식) 5,000 - 제세공과금(5,000천원x7개월) 35,000 ◦ 자산취득비 38,000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pc(2,000천원x11대) 22,000 - 복합기(3,000천원x2대) 6,000 - 기타(10,000천원x1식) 10,000 ◦ 보상비 176,000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획전시 운영전시품 대여 160,000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20,000천원x8개월) - 감정평가(2,000천원x8개월) 16,000 ◦ 시설관리비 348,000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용역비(건축,기계,환경정비,경비) 280,000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35,000천원x8개월) - 수장고 관리(5,000천원x8개월) 40,000 - 시설비품 관리(3,500천원x8개월) 28,000 ◦ 사업비(20,000천원x8개월) 160,000 ◦ 위탁대행수수료 60,304

- 동 시설을 시가 직영으로 운영시, 전태일 기념관 및 노동사 기획 전시관 등 전시시설을 운영할 전문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며,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시공간의 운영을 위해 관련 노하우와 풍부한 네트워크를 가진 민간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해보임.
- 또한 노동복합시설의 위탁사무에는 시설관리 이외에 노동권익 센터, 감정노동 권리보호센터와 같은 입주시설과 외부전문가가 함께 운영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는 사무도 포함되어 있어, 입주하게 될 각 센터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운영 주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시는 노동복합시설의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, 시설의 리모델링 등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통해 예정된 개관시기인 2018년 하반기에 시민들에게 노동복합시설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, 민간위탁 후에도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되도록 시의 철저한 관리·감독이 필요해보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직위원 11명, 참석위원 6명, 전원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노동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2009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노동복합시설(가칭)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
근로복지시설로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
조례 제6조 제9호에 근거하여 민간위탁(신규)으로
운영하고자 함
- 나. 노동존중문화 확산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한국 노동운동의
시작을 연 전태일 열사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산재된 노동관련
시설을 집약화하여 전문인력(노무사, 전시 큐레이터 등)이
확보된 전문단체에 민간위탁(신규) 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함
- 다.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
결과(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), ‘적정’한 것으로
결정되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노동복합시설(가칭)
- 소재지 : 종로구 관수동 152-1
- 시설규모 : 2,062.24m²(지상1층~5층)
- 준공일자 : 2018년 상반기(예정) ※2018년 상반기 개관 예정
- 이용대상 : 시민

나.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8.3.1. ~ 2021.2.28.)
- 위탁업무
 - 노동복합시설 시설물 관리(경비, 청소, 설비)
 - 전태일기념관 및 노동운동사 전시관 운영, 노동교육장 운영 등
- 소요예산('18년) : 1,267,000천원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라. 민간위탁 필요성

- 노동복합시설(가칭)은 노동존중문화 확산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한국 노동운동의 시작을 연 전태일 열사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산재된 노동관련 시설을 집약화하여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
- 전문인력(노무사, 전시 큐레이터 등)이 확보된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○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

제28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(이하 “근로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③ 국가는 사업주(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노동조합(지부·분회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

제11조(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)

①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직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18년 예산(안) 제출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노동정책담당관 복지시설팀 길민하 (☎ 2133-5426)